

의안번호	2212954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 9. 24.
추계번호	25F5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지방 경제산업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124.2억 원 2034년 32.3억 원 등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총 8년간 1,289.6억 원(연평균 16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의 세액감면이 7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4년까지 발생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등 나머지 규정들의 세액감면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4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조의2 제1항)	-26	-51	-51	-39	-26	-13			-206	-3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64조 제1항)	-19.6	-39.2	-39.2	-39.2	-39.2	-19.6			-196.2	-32.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99조의9 제1항)	-64.6	-129.3	-129.3	-129.3	-129.3	-97.0	-64.6	-32.3	-775.6	-97.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8 제1항)	-0.2	-0.5	-0.5	-0.3	-0.2	-0.1			-1.8	-0.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17 제1항)	-11.1	-22.2	-22.2	-16.7	-11.1	-5.6			-88.8	-14.8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20제1항)	-0.1	-0.2	-0.2	-0.1	-0.1	-0.05			-0.8	-0.1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22제1항)	-2.6	-5.1	-5.1	-3.8	-2.6	-1.3			-20.4	-3.4
계	-124.2	-247.5	-247.5	-228.4	-208.5	-136.7	-64.6	-32.3	-128.6	-161.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2	안 제64조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3	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4	안 제121조의8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5	안 제121조의9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에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1조의17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7	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 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8	안 제121조의21제1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9	안 제121조의22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 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안 제64조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	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	안 제121조의8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	안 제121조의9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x	○ 동 조항의 최근연도 감면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세 등의 감면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6	안 제121조의17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7	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8	안 제121조의21제1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x	○ 동 조항의 최근연도 감면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세 등의 감면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9	안 제121조의22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의 세액감면이 7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4년까지 발생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등 나머지 규정들의 세액감면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 (안 제12조의1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102.8억 원)을 바탕으로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최근 5년('21~'25년) 평균 102.8억 원 수준
 - 동 규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연평균 실적에 '1/4'를 곱하여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연 단위 발생액(100% 감면기준)을 계산하고, 향후 세수효과를 계산
 - 신규 입주기업의 연 단위 감면액(100% 감면) = 102.8억 원 × 1/4 = 약 26억 원
- (안 제64조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2026년 감면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신규 감면 발생액을 가정한 후, 향후 감면 발생액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계
 -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 2026년 전망치(98.1억원)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은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2026년 감면액(98.1억 원)의 20% 수준인 19.6억 원으로 가정
- (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창업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창업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387.8억원
- 신규 창업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387.8억 원 $\times$ 1/6 = 약 65억 원
 -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6으로 나누어 환산
- 다만,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2026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위기지역이 없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 세수효과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 (안 제121조의8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0.9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0.9억 원 $\times$ 1/4 = 약 0.2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안 제121조의17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창업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창업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다만, 동 감면액은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액의 합계로, 개정안은 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그러나 각 호별로 감면실적이 구분된 자료가 부재하여 제121조의17제1항 전체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며,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44.4억원
 - 신규 창업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44.4억 원 $\times$ 1/4 = 약 11.1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

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0.4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0.4억 원 $\times$ 1/4 = 약 0.1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안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10.2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10.2억 원 $\times$ 1/4 = 약 2.6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이외에도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금융중심지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연도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안 제121조의9, 제121조의21)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은 2022년(6억원), 2024년(0.02억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25·2026년 모두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금융중심지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이 2021년 이후 전혀 발생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의2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사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은 2021년 52억 원, 2025년(잠정치) 157억 원으로 연평균 102.8억 원 수준
 - 동 규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실적 등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큰 편

[표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21~2025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법인세	52	116	114	75	157
소득세	0.7	0.4	—	—	—
합계	52.7	116.4	114	75	157

주: p는 잠정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1~2025년 연평균(102.8억 원) 감면실적 수준이 향후 2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감면실적을 연간 감면액으로 환산하여 시점별 배분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102.8억 원 × 1/4 = 약 26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표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2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입주	26	26	26	13	13	
2027년 입주		26	26	26	13	13
합계	26	51	51	39	26	13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3) 추계결과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6억 원 2032년 13억 원 등 2027년에서 2032년까지 6년간 총 206억 원(연평균 3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연장(안 제2조의2 제4항)	-26	-51	-51	-39	-26	-13	-206	-34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4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운영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12.29. 개정된 규정으로, 농공단지¹⁾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²⁾에 입주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나주·나주혁신·김제지평선·북평·담양·동함평·세풍일반산업단지, 장흥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율,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8.12.24. 일부개정: 5년간 법인세 등에 대한 50% 감면율,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감면 한도와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신설
- 2021.12.28. 일부개정: 감면대상 사업장의 폐업 또는 법인 해산 등의 경우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

○ (현행규정)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 감면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
 - ②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감면한도: ①+② 또는 ①+③
 -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상시근로자수×1,500만원 ③ 청년상시근로자수 등×2,000만원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49.5억 원에서 2026년 98.1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표 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법인세	38.9	49.2	45.9	98	96	98
소득세	10.6	4.9	4.0	2	0.1	0.1
합계	49.5	54.1	49.9	100	96.1	98.1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6년 감면액 전망치를 바탕으로 신규 입주기업으로 인한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총 13개 지역을 말한다.

-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2026년 감면액(98.1억 원)의 20% 수준인 19.6억 원으로 가정
 - 2026년 감면실적 전망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입주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 중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감면액의 1/5인 19.6억 원으로 가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6년 입주기업	19.6	19.6	19.6	19.6	19.6	
'27년 입주기업		19.6	19.6	19.6	19.6	19.6
감면 추계액	19.6	39.2	39.2	39.2	39.2	19.6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19.6억 원, 2032년 19.6억 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96.2억 원(연평균 32.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64조 제1항)	-19.6	-39.2	-39.2	-39.2	-39.2	-19.6	-196.2	-32.7

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9 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5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214억 원에서 2026년 452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표 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법인세	102	179	182	153	171	175
소득세	112	229	229	315	267	277
합계	214	408	411	468	438	452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창업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창업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387.8억원
- 신규 창업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387.8억 원 × 1/6 = 약 65억 원
 -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6으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창업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7년에 걸쳐 발생
- 다만,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2026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위기지역이 없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

- 을 가능성이 있어, 본 세수효과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표 9]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4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6년 창업기업	64.6	64.6	64.6	64.6	64.6	32.3	32.3	
'27년 창업기업		64.6	64.6	64.6	64.6	64.6	32.3	32.3
감면 추계액	64.6	129.3	129.3	129.3	129.3	97.0	64.6	32.3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64.6억 원, 2034년 32.3억 원 등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총 775.6억 원(연평균 9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7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4년까지 발생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한 2년 연장(안 제99조의9제1항)	-64.6	-129.3	-129.3	-129.3	-129.3	-97.0	-64.6	-32.3	-775.6	-97.0

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8)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1억 원, 2026년 0.86억 원 수준

[표 11]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법인세	1	1	1	0.6	0.8	0.8
소득세	0	0	0	0.01	0.06	0.06
합계	1	1	1	0.6	0.9	0.86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0.9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0.9억 원 × 1/4 = 약 0.2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입주기업	0.2	0.2	0.2	0.1	0.1	
2027년 입주기업		0.2	0.2	0.2	0.1	0.1
감면 추계액	0.2	0.5	0.5	0.3	0.2	0.1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0.2억 원, 2032년 0.1억 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8억 원(연평균 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8제1항)	-0.2	-0.5	-0.5	-0.3	-0.2	-0.1	-1.8	-0.3

마.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17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

특세 감면실적은 2021년 8억 원, 2026년 58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1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법인세	8	49	72	36	57	58
소득세	0.1	0	0	0.07	0	0
합계	8	49	72	36	57	58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창업 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창업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다만, 동 감면액은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액의 합계로, 개정안은 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그러나 각 호별로 감면실적이 구분된 자료가 부재하여 제121조의17제1항 전체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며,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44.4억원
- 신규 창업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44.4억 원 × 1/4 = 약 11.1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창업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1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6년 창업기업	11.1	11.1	11.1	5.6	5.6	
'27년 창업기업		11.1	11.1	11.1	5.6	5.6
감면 추계액	11.1	22.2	22.2	16.7	11.1	5.6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11.1억 원, 2032년 5.6억 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88.8억 원(연평균 14.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17제1항)	-11.1	-22.2	-22.2	-16.7	-11.1	-5.6	-88.8	-14.8

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20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0.1억 원, 2026년 0.3억 원 수준

[표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합계	0.1	1	0	0.5	0.3	0.3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

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0.4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0.4억 원 × 1/4 = 약 0.1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6년 입주기업	0.1	0.1	0.1	0.05	0.05	
'27년 입주기업		0.1	0.1	0.1	0.05	0.05
감면 추계액	0.1	0.2	0.2	0.1	0.1	0.05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0.1억 원, 2032년 0.05억 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0.8억 원(연평균 0.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의2제1항)	-0.1	-0.2	-0.2	-0.1	-0.1	-0.05	-0.8	-0.1

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2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0.1억 원, 2026년 0.3억 원 수준

[표 20]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합계	11	24	7	5	4	4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10.2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10.2억 원 × 1/4 = 약 2.6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21]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6년 입주기업	2.6	2.6	2.6	1.3	1.3	
'27년 입주기업		2.6	2.6	2.6	1.3	1.3
감면 추계액	2.6	5.1	5.1	3.8	2.6	1.3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
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6억 원, 2032년 1.3억 원 등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20.4억 원(연평균 3.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표 2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2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한 2년 연장(안 제121조 의22제1항)	-2.6	-5.1	-5.1	-3.8	-2.6	-1.3	-20.4	-3.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